

무엇이든 물어보세요~!

Q

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기 위한 화상디자인의 요건은 무엇입니까?

A

-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물품상에 구현되어 있을 것

- 개정 디자인심사기준은 “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(화상디자인)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(디자인심사기준 제3조제1호 다목)
 -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,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화 기기 등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화상 디자인 자체만은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
- 형태적 일체성과의 관계

- 디자인심사기준은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서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디자인이 표현된 경우에는 1디자인 1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. 다만, 형태적 일체성 등이 인정되어, 전체로서 디자인창작상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(디자인심사기준 제12조제1항제5호 참조)
 - 따라서 Icon set 등 표시화면상에 표시되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도형은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1디자인으로 인정됩니다.
 - 또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 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과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경계선을 1점 쇄선(— · · —)으로 도시하여야 하므로, Icon set 등의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상디자인의 경계부분을 1점 쇄선으로 도시하여야 합니다.

- 동적 디자인과의 관계

일반적으로 디자인이 변화하는 경우(동적 디자인)라 함은, 디자인에 관련된 물품의 형상, 모양 또는 색채가 그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해 변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
-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변화하는 경우의 예를 들면,

- 표시되는 도형 그 자체가 변화하는 경우
 - 표시되는 도형 등의 위치가 이동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.

- 이와 같이 화상디자인이 변화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화상디자인이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변화에 일정성이 있어야 하며 또한 당해 화상디자인의 변화 전후의 도형에 ‘형태적 관련성’이 인정되어야 합니다.

- 한편, 변화하는 화상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출원서의 【디자인의 설명】란에 변화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 또한 출원서의 기재 및 출원서에 첨부한 사시도와 6면도만으로는 그 변화 전후의 도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, 사시도와 6면도 이외에 변화 전후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참고도면(변화후의 정면도 1, 변화후의 정면도 2, . . . 순)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